

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,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
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: 200만원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,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: 300만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재난지원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) 제13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소지자는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과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3조(이용한도 등)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,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. 다만,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한다.		제13조(이용한도 등)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,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		
		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: 200만원		
		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,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: 300만원		
②~⑤ (생략)		②~⑤ (현행과 같음)		